의 안 번 호	2204	【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12. 1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2. 1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2. 15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지원국장 김세동)

가. 제안이유

○ 복산1·2동 통합에 따른 감축 인력을 활용하여 도서관과, 소상공인계등 신규 수요 분야에 재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(안 제4조 별표 3)

1) 총 계 : 713명(변동없음)

2) 일반직 : 710명(변동없음)

가) 5급 : 46명 → 45명(감 1명)

나) 6급 이하 : 657명 → 658명(증 1명)

다. 근거법규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산1·2동 통합에 따른 감축 인력을 활용하여 도서관과, 소상공인계 등 신규 수요 분야에 재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상위법 저촉 등 조례 일부개정 내용 전반을 검토한 바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· 휴양 · 안전 · 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